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금융은 **통통**하게 소비자는 **행복**하게

보도	2025.11.24.(월) 조간	배포	2025.11.21.(금)		
담당부서	분쟁조정1국 분쟁조정기획팀	책임자	팀 장	김동훈	(02-3145-5212)
		담당자	수 석	김수민	(02-3145-5216)
			선 임	박초원	(02-3145-5215)

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**-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관련 -**

주요 내용

- ◆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「시세하락 손해」는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한 경우 수리이력으로 인한 차량의 시세하락에 대해 보상
 - 자동차보험 약관은 사고로 인해 중고차 시세가 실제 하락한 금액이 아니라, 피해 차량의 차령, 수리비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**시세하락분으로 간주**하여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
- ☞ 시세하락 손해 관련 지속·반복적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유의사항을 안내함으로써, 소비자의 오해로 인한 분쟁 발생을 예방

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

- ◇ 자동차 사고 피해로 파손된 차량에 대해 차량 원상 복구를 위한 수리비 외에도 **약관상 일정 기준을 충족**할 경우 **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또한 보상**받을 수 있으나,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① 자동차 사고 피해차량이 ❶**출고**된 지 **5년 이하**이고, ❷**수리비용**이 사고 직전 **자동차가액**의 **20%**를 **초과**할 경우, 약관에 따라 시세하락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
 - ②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시세하락 손해 **보상금액**은 중고차 시장에서 **실제 시세**가 **하락한 금액**이 **아니라**,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**금액**(차령에 따라 수리비용의 10~20%)입니다.

1

자동차 사고 피해차량이 ①출고된 지 5년 이하이고, ②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%를 초과할 경우, 약관에 따라 시세하락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

[민원 사례1]

- 문○○씨는 출고 후 7년이 경과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타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로 인해 수리비가 12백만원 발생하였고,
- 중고차 시장에 확인해 본 결과 시세가 17백만원 가량 하락하였다는 민원을 제기
- ➡ 자동차보험 약관은 시세하락 손해 지급 대상을 출고 후 5년 이하인 차량으로 정하고 있어, 보험회사는 문○○씨의 자동차가 출고 후 7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시세하락 손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

[민원 사례2]

- 박○○씨는 출고 후 3년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이 박○○씨의 차량을 충돌하여 이로 인한 수리비가 2백만원 발생하였고,
- 이에 박○○씨는 차량의 중고시세(3천만원)가 사고로 인해 하락할 것이 예상되므로 시세하락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
- ➡ 자동차보험 약관은 시세하락 손해 지급 대상을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%를 초과한 경우로 정하고 있어, 보험회사는 박○○씨의 수리비용(2백만원)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(3천만원)의 20%(6백만원)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시세하락 손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

< 소비자 유의사항 >

- ◆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 손해는 피해차량의 실제 중고차 시장에서의 시세 하락 여부와는 상관없이, ①사고 당시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대해, ②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%를 초과하여야 지급됩니다.

2

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시세하락 손해 보상금액은 중고차 시장에서 실제 시세가 하락한 금액이 아니라, 약관상 지급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(수리비용의 10~20%)입니다.

[민원 사례]

- 이○○씨는 최근 자동차사고를 당해 출고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이 파손되었는데, 보험회사에서 해당 차량에 대해 시세하락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*고 하여

* 출고 후 5년 이하인 피해차량의 수리비용이 차량 시세의 20%를 초과

- 중고차 시장에서 실제 거래 시세가 하락한 금액인 5백만원을 보험회사로부터 시세하락 손해로 보상받을 것으로 기대

➡ 자동차보험 약관은 출고 후 1년 이하인 차량에 대한 시세하락 손해의 인정기준액을 수리비용의 20%로 정하고 있어,

보험회사는 중고차 시세하락 금액(5백만원)이 아니라 차량 수리비(6백만원)의 20%인 120만원을 시세하락 손해 보험금으로 지급

< 소비자 유의사항 >

- ◆ 자동차사고 피해차량이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 손해 지급 기준에 해당할 경우, 중고차시장에서 **실제 시세**가 **하락한 금액**이 **아닌**, 출고 후 경과 기간에 따라 **수리비용**의 **10%~20%**를 시세하락 손해 상당액으로 **지급**받을 수 있습니다.

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지급비율

구 분	지급 비율
출고 후 1년 이하	수리비용 ^{주)} 의 20%
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	수리비용 ^{주)} 의 15%
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	수리비용 ^{주)} 의 10%

주) 수리비용이 차량시세의 20%를 초과할 경우만 지급

- ◆ 다만, 시세하락손해 지급 여부, 금액과 관련하여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법원의 판결은 약관과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

붙임

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중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개요

-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는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수리했어도 사고 이력으로 인해 중고차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
 -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은 피해 차량의 차령, 수리비를 감안하여 시세하락 손해 보험금을 산정하도록 지급기준을 규정

< 시세하락 손해 보험금 지급기준 >

- ▶ **(지급대상)** 출고 후 5년 이하인 피해차량의 수리비용이 차량 시세의 20%를 초과하는 경우에 보상
- ▶ **(인정기준액)**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20%,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%,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%를 지급

- 한편,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보험금과 관련하여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법원의 판결은 약관과 달리 결정될 수 있으며,
 - 이 경우 보험회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약관에 따른 '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'으로 보아 지급

보상 예시

- 신○씨는 출고 후 6개월된 차량(시세 3천만원)을 운전하다가 차량 충돌 사고로 파손되어 수리비 8백만원을 상대차량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

➡ 상대차량 보험회사는 교통사고 피해자인 신○씨에게 필요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수리비 8백만원을 지급하였고,

수리비 규모가 약관상 시세하락 손해 지급 대상에 해당*함에 따라 수리비의 20%**(160만원)를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보험금으로 지급

* 피해차량이 출고 후 5년 이하이고, 수리비(8백만원)가 차량시세(3천만원)의 20%(6백만원)를 초과

**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의 경우 시세하락 손해 인정기준액은 수리비의 20%

제6조(보상하는 손해) ② 「대물배상」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·사용·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.

제10조(지급보험금의 계산) ① 「대인배상Ⅰ」, 「대인배상Ⅱ」, 「대물배상」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‘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’과 ‘비용’을 합한 금액에서 ‘공제액’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.

2. 「대인배상Ⅱ」, 「대물배상」: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

지급 보험금	=	‘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’ 또는 ‘법원의 확정판결 등 ^(*) 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’	+	비 용	-	공제 액
-----------	---	---	---	--------	---	---------

② 소송(민사조정, 중재를 포함)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^(*)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(지연배상금을 포함)을 제1항의 ‘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’으로 봅니다.

(*) ‘법원의 확정판결 등’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,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.

<별표 2> 대물배상 지급 기준

6. 자동차시세 하락손해

가. 지급대상

사고로 인한 자동차(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)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%를 초과하는 경우

나. 인정기준액

- (1)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: 수리비용의 20%
- (2)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: 수리비용의 15%
- (3)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: 수리비용의 10%